

2018. 3.

**쌀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황윤재·김종인·윤승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2

제2장 국내 쌀 시장 여건 및 유통 실태

- 1. 쌀 수급 여건 및 관련 정책 변화 3
- 2. 쌀 유통 경로 및 실태 8

제3장 쌀 품질유지기한 관련 국내외 선행 실험연구

- 1. 국내 연구 사례 15
- 2. 일본 연구 사례 19

제4장 국내외 쌀 기한표시제도 운영 실태

- 1. 농식품 기한 표시 일반 20
- 2. 국내 쌀 기한표시 실태 21
- 3. 해외 주요국의 쌀 기한표시 현황 24

제5장 수요 측면에서의 쌀 표시 이용 실태와 기한표시제도 평가

- 1. 소비자 인식과 평가 33
- 2. 외식 및 급식업체 인식과 평가 43

제6장 공급 측면에서의 쌀 기한표시제도 인식과 도입 평가

- 1. 도정업체 인식과 평가 50
- 2. 유통업체 인식과 평가 57

제7장 쌀 기한표시제 도입 여건 진단과 과제

1. 도입 여건 진단	68
2. 기한표시제 도입 방안과 과제 검토	71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쌀의 공급 과잉 상태가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쌀의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음.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들은 주로 공급 측면에서 논의·제시되고 있음. 정부는 쌀의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쌀의 수요처를 확대하고자 하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특정 용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인구 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인해 양적 측면에서의 쌀 수요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정부는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 그러나 쌀의 품질 제고도 주로 생산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고 있으며, 소비자를 고려한 방안들은 드문 편임. 지속적인 쌀의 고품질화를 달성하고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 측면의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쌀 수요 확대 및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 제고 방안으로서 쌀 소비권장기한 표시의 활용이 제안된 바 있음. 그러나 표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식품소비 행태와 기한표시에 대한 이해·인식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 소비권장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급 부문을 고려하여 도입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고품질 쌀 유통 촉진, 쌀 소비 확대 등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쌀 소비권장기한 표시제의 도입 가능성 및 실효성·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내 쌀 수급 및 표시 관련 실태와 해외 주요국의 쌀 기한표시 관련 현황 조사, 수요 및 공급 관련인·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 여건을 진단하며 대응 방안 및 관련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첫째, 국내 쌀 및 쌀 표시 관련 실태와 해외 주요국 쌀 기한표시 현황을 검토함.
 - 둘째,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쌀 기한표시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함.
 - 셋째, 쌀 기한표시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과 대응 방안 및 과제를 검토함.

제 2 장

국내 쌀 시장 여건 및 유통 실태

1. 쌀 수급 여건 및 관련 정책 변화

1.1. 쌀 수급 현황 및 재고 변화

1.1.1. 쌀 생산 지속적 감소

-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고소득 작물 전환 등 논밭 형질 변경과 공공시설 및 건물건축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임. 벼 재배 면적은 1990년 124만 4천ha에서 2017년 75만 5천ha로 연평균 1.8%씩 감소함.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 등이 도입된 2016년 이후로는 연평균 면적 증감률이 2.8%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쌀 생산량은 2001년 551만 5천 톤으로 1990년(560만 6천 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397만 2천 톤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400만 톤 이하로 감소함.

1.1.2. 쌀 소비 감소 추세

- 인구 구조 변화, 식생활 서구화 등 식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 곡물 중심의 전통적인 식생활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최근 곡물 소비지출의 감소 추세가 식료품비 지출 감소 추세를 상회함.
 - 월평균 가계 식료품비 지출액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0.29% 감소한데 비해, 곡물의 경우 지출액이 같은 기간 연평균 2.83% 감소함.
- 식용 쌀 소비량은 1990양곡년도 512만 7천 톤에서 2016양곡년도 319만 9천 톤으로 연평균 1.8%의 감소율을 나타냄. 200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2.9%의 비교적 급속한 감소율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됨.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1990년대와 2000년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2.3%, 2.6%로 2000년대 들어 감소폭이 다소 확대됨. 다만 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0.9%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음. 2017양곡년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1990양곡년도 119.6kg의 절반 수준임.

1.1.3. 쌀 공급 과잉 경향

- 쌀 재고량은 1990년 202만 5천 톤에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1996년 24만 4천 톤으로 감소함. 2000년 초에는 100만 톤을 훨씬 웃도는 수준까지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2008년산과 2009년산 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양곡연도 기말재고량은 2000년대 초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함.
- 2010년 150만 9천 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쌀 재고는 지속적인 풍작과 이에 따른 정부의 시장격리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남. 2017양곡연도 기말재

고량은 186만 톤 수준임. 쌀 재고량은 FAO의 권장수준(연간 소비량의 17%)을 웃도는 수준이나 잦은 기상이변으로 수급 불안의 가능성이 존재함.
 - 쌀의 공급과 수요는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0년 이후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구조적 쌀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됨.

1.2. 쌀 수급 정책 동향과 변화

1.2.1. 최근 동향

- 정부는 매년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있음. 2017년 9월에는 시장 격리, 민간 벼 매입지원, 공공비축제 개선, 재고 관리, 수요 발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함.
- 정부는 2017년 10월 14일부터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를 시행함. 또한 2018년부터 쌀 공급 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도입하여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 톤) 감축하고자 함.
- 해외 쌀 수요 발굴의 일환으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를 통해 베트남에 쌀 지원을 실시함.

1.2.2. 수급 정책 변화

- 정부는 쌀 수급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기존의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농가의 소득 감소를 직접지불제로 보전하는 양정개혁을 단행함. 그러나 양정개혁 단행 이후에도 시장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정부는 8개 연도에 걸쳐 시장격리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였음.

- 특히, 정부 시장격리가 2014년산부터 최근 4개 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시행되어 2017양곡연도 말 정부재고는 186만 톤 수준에 달함. 이는 적정 재고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킴.

□ 사후적 재고 감축 방안

- 주정용은 주로 고미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0만 톤의 수요가 있고, 10만 톤 당 1,690억 원의 판매 손실이 발생함. 일반가공용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23만 톤을 정부재고에서 공급하였으며, 10만 톤 당 1,444억 원의 판매 손실이 발생함.
- 사료용 쌀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 거부감 및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아직 미미하나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최대 50만 톤 정도의 수요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10만 톤 당 1,569억 원의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할인하여 공급하는 사회복지용 공급이 최근 4년 간 연평균 9만 톤 정도였고, 10만 톤 당 1,233억 원의 판매 손실이 발생함. 해외원조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재고처리비용이 10만 톤 당 2,432억 원으로서 가장 많고, 쌀 수출국들의 이익제기 가능성도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정부양곡의 판매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실이 있지만, 양곡 수급관리를 통한 쌀값 안정화 및 적정 재고관리 등의 측면도 있음.

□ 사전적 재고 감축 방안

- 정부는 현재와 같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는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

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2년간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임.

- 전작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조사료 및 두류 등을 대상으로 한 전작보상형을 중심으로 하되, 전작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풋거름작물 재배를 전제로 한 휴경을 허용할 방침임. 또한 가격변동성이 크고, 산지 폐기 등의 수급조절 정책을 실시하는 배추, 무, 고추, 대파 등도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주요내용	50,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 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17년산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 단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계획면적 및 지원단가	총 지원금액: 50,000ha×340만원 = 170,000백만 원					
	구분	조사료	두류			일반(풋거름 작물 포함)
			콩	팥	녹두	
계획면적 (ha)	15,000	14,650	250	100	15,000	
지원단가 (만원/ha)	400	280			340	

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이 저조하자 2018년 2월 26일에 기존의 사업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http://www.mafra.go.kr>,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농가참여 속도 낸다” 2018.2. 2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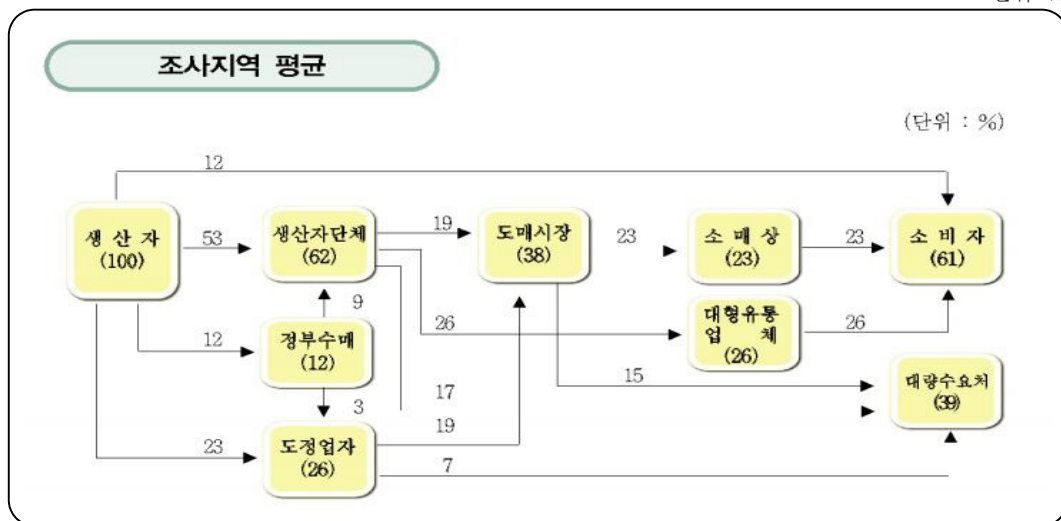
2. 쌀 유통 경로 및 실태

2.1. 쌀 유통 경로

- 쌀은 생산 이후 소비자에게 직거래되거나 생산자단체와 도정업체가 매입한 쌀이 가공 과정을 거쳐 도매시장(도매상),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로 유통되며, 정부 구매 쌀은 생산자단체와 도정업체로만 유통됨.

〈쌀 유통경로〉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 49) 참조.

2.2. 쌀 유통 단계별 실태

2.2.1. 산지 유통 실태

- 쌀 산지 유통은 도정업체(미곡종합처리장 및 일반 정미소)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농협 RPC, 민간 RPC, 임도정공장, 비 RPC 농협으로 분류됨. RPC 사업장은 2001년까지 328개소(농협 200개소, 민간 128개소)를 조성한 후 통폐합하여 2017년 현재 214개소(농협 145개소, 민간 6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쌀 유통량의 약 68%를 담당함.

- 연도별 RPC의 벼 매입량을 살펴보면, 1995년에 279천 톤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200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함. 전체 생산량에서 약 50~60%가 RPC로 유통되고 일반 정미소로는 약 30%가 유통되고 있음. 나머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분이 약 10%, 농가자가소비 및 연고미 판매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2. 소비지 유통 실태

가. 유통 현황

- 쌀 소비지 유통은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농협중앙회 양곡유통센터, 소매상, 대량수요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RPC와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소매상의 직거래 형태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유통 주체별로 도·소매상이 약 40%, 대형마트 약 30%, 대량수요처가 약 30% 정도 점유함.
-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농협 RPC, 민간 RPC·정미소, 농산물 수입업체 등을 통해 쌀을 반입함. 대량수요처의 직거래 비율 증가와 농협양곡유통센터의 이주 등으로 시장 반입량은 정체 및 감소 추세임.
- 농협중앙회 양곡유통센터는 취급되는 물량 전부가 지역농협 RPC에서 반입되며, 물량은 농협 하나로 매장, 도·소매상, 대량수요처로 판매함. 판매처별 비율은 농협 하나로 매장 30%, 도·소매상 50%, 대량수요처 20%를 차지함.

- 쌀 소매상은 대형유통업체 및 슈퍼마켓·전문양곡소매상으로 구분되며, 대형유통업체는 벤더업체, 지역농협 RPC를 통해 곡물을 구입함. 슈퍼마켓과 전문 양곡소매상은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상, 민간 RPC 등으로부터 곡물을 매입함.
- 대량수요처는 쌀 가공제품 생산회사, 단체급식, 식자재업체 등이며 산지 RPC, 도매상으로부터 곡물을 구입함. 대기업이 운영하는 단체급식업체의 매출신장 및 외식문화 확대로 인해 가정에서 소비되는 쌀은 감소하고 있으나 대량수요처에서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나. 포장 쌀 판매 실태 조사: 도정일자 관련

- 소비단계 유통채널 중에서 대형유통업체, 기업형 슈퍼마켓, 중소형 슈퍼마켓과 백화점, 친환경전문점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 제품의 도정일자 경과 수준을 조사함.¹
- 조사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도정일자 초과기간(조사일자와 도정일자 간 기간)이 가장 긴 제품의 초과기간은 최소 27일부터 최대 130일까지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업체 중에서 초과기간이 1달 이내(30일 기준)인 업체는 4개 업체, 1-2달 이내(31-60일 기준)인 업체는 3개 업체, 2-3달 이내(61-90일 기준)인 업체는 6개 업체, 3달 이상(91-120일 기준)인 업체가 2개 업체였음.
 - 조사대상 1개 업체의 경우 2015년산(2016년 도정) 수입 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¹ 연구진이 2017년 12월 1일~12월 21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주간 현장조사를 실시함. 다만 현장조사는 겨울철에 실시되어, 봄부터 가을철 판매실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례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유통업체의 전반적인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않는 한계가 있음.

〈소비단계 유통채널별 판매 쌀 제품 도정일자 초과기간(백미 기준)〉

단위: 일

구분	업체 분류	판매일자 기준 도정일자 초과기간	비고
대형 유통업체 (7개)	A 업체	27	443일(수입 쌀)
	B 업체	54	
	C 업체	25	
	D 업체	69	
	E 업체	49	
	F 업체	80	
	G 업체	84	
기업형 슈퍼마켓 (4개)	(가) 업체	34	
	(나) 업체	73	
	(다) 업체	93	
	(라) 업체	58	
중소형 슈퍼마켓(2개)	㉠ 업체	79	
	㉡ 업체	45	
백화점(1개)	㉢ 업체	61	
친환경 전문점 (3개)	㉣ 업체	130	
	㉤ 업체	27	
	㉥ 업체	21	
평균		59	

- 주 1) 조사일 기준으로 조사업체별로 조사일자와 도정일자 간의 기간이 가장 긴 제품의 사례를 선정·정리함.
 2) 유통채널별 상품 구색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조사분석을 위해 현미를 제외하고 백미를 기준으로 조사함.
 3) 평균 초과기간은 수입쌀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도정일자는 제품 포장지 또는 스티커에 인쇄하거나, 손으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었음. 표시위치는 주로 ① 양곡표시제에 따른 일괄표시면의 도정연월일 항목에 표시하거나 ② 일괄표시면에 별도표시 여부를 기재한 후 제품의 주표시면에 별도 표시하였음. 이밖에 ③ 일괄표시면에 별도표시 여부를 기재한 후 제품의 측면, 상단 또는 하단 등에 표시하고 있었음.
- 현장조사에서 기한 표시위치가 일관되지 않아 기한표시 확인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소매업체별 진열 방식 및 제품 포장단위에 따라 기한표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 예컨대 대용량 제품의 경우 기한표시가 노출되지 않고 진열될 경우 기한표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음.

다. 쌀 품질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분석

- 민관연계 통합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제기된 쌀 품질 관련한 상담사례(2013. 1.-2018. 2.) 중에서 쌀 품질관련 상담 사례는 19건 정도였음. 이 중 인터넷 구매 제품 사례는 10건, 오프라인 구매 제품 5건, 기타 4건으로 인터넷으로 구매 쌀 제품의 상담사례가 많았음.
 - 쌀 관련 소비자 불만은 곰팡이, 쌀벌레, 묵은 쌀, 이물질 혼입 등 쌀의 품질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또한 온라인을 통해 쌀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당시 쌀 도정일자 등 쌀 품질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구매한 쌀이 배송된 이후 불만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이밖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참여 기관 중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접수된 상담 사례(2016. 1 ~ 2017. 12)를 검토한 결과, 쌀 품질 관련한 상담 사례는 총 69건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불만 요인은 품질불량, 변질, 이물질 등이었음. 이 중 품질불량 상담건은 밥맛이나 묵은 쌀, 포장 불량, 변질 상담건은 변색, 악취, 상함 등으로 구성됨. 주요 이물질 사례에는 벌레, 돌이나 플라스틱 등 다칠 수 있는 이물에 관한 사례가 있었음.

- 쌀 품질 관련 상담 분석결과,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쌀을 구입한 장소는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에서의 소비자 불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쌀 품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분석: 2013-2017년〉

단위: 건

쌀 구매처	묵은 쌀	표시 불만	곰팡이	쌀벌레	냄새	이물질 혼입	기타
온라인 구매	2	1	3	-	2	2	3
오프라인 구매	1	1	3	2	1	-	1
기타	-	-	1	1	-	1	1

주 1) 쌀 구매처 기타는 상담사례에서 나랏미 쌀과 관련된 사례와 쌀 구매처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2) 기타는 쌀이 변색되었거나, 맛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을 포함함.

3) 불만 요인이 다수인 경우 중복 계산함.

자료: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자료(<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13>: 2018. 3. 15)를 참조하여 정리함.

〈소비자시민모임 쌀 품질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이유: 2016-2017년〉

단위: 건, %

불만상담 이유	품질 불량	변질	이물질	전체
건수(건)	28	23	18	69
비율(%)	40.6	33.3	26.1	100.0

자료: 소비자시민모임 내부자료.

〈소비자시민모임 쌀 품질관련 상담 사례에서의 쌀 구입 장소: 2016-2017년〉

단위: 건, %

구입 장소	대형마트	온라인 (인터넷)	슈퍼마켓	소형매장	무응답	전체
건수(건)	23	23	12	9	2	69
비율(%)	33.3	33.3	17.4	13.0	2.9	100.0

자료: 소비자시민모임 내부자료.

2.2.3. 수입 쌀 유통 실태

- 2015년 쌀 관세화에 따라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수입관리 체제로 전환('15~: 40만 8천 톤), 국영무역 방식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량 도입함(민간은 관세납부(513%)시 도입 가능).

- TRQ 물량은 크게 가공용 쌀(가공용, 주정용 등)과 밥쌀용 쌀(소비자 시

판용)로 구분됨. 2017년 기준 TRQ로 약 38만 톤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 2.5만 톤(약 6.7%)은 밥쌀용 쌀(멥쌀)로 수입되었음.

- 수입쌀은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중도매인, 농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통해 구매되어서 중간도매상, 식자재업체, 소매업체 등을 통해서 개인 판매되거나, 외식업체(급식업체 포함), 인터넷 판매 등이 이루어짐.
 - 김태훈·김지연(2014: 13)에 의하면 공매업체의 수입 쌀 유통경로에서 중간도매상으로의 유통이 37.1%로 가장 많았음.
- 수입 단계에서 가공용 쌀은 PE(Polyethylene, 폴리에틸렌)재포장 등으로 40kg기준으로 수입되며, 밥쌀용 쌀은 시중의 종이 포장재나 PE재포장 등으로 20kg기준으로 수입되고, 이후 포장지를 해체하여 소포장 단위로 재포장한 후 대형마트 등에 납품됨. 수입쌀의 경우 묵은 쌀이 대부분이고 수입 포장지를 해체해 재포장하는 등 혼합의 문제가 대두된 바 있음.
- 가공용 쌀은 지방자치단체나 시군구의 각 창고로 보내져 친환경관리과 등에서 관리 또는 농협 등에 판매됨. 밥쌀용 쌀은 입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 atbid.co.kr)을 통해 고가순, 물량순으로 낙찰됨. 현지 생산부터 소비지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최근 2년간 구매입찰 공고 내역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입쌀(멥쌀 기준)의 통관에 소요되는 기한이 최소 98일에서 최대 328일에 달했음. 이에 따라 시중에 생산 이후 1년~2년 이상 경과된 제품도 판매되는 실정임.
 - 연중판매로 이루어지며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양곡도매소매업체 및 중도매인 등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곳이 대상임.
- 수입쌀은 우리나라 “양곡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양곡표시제도에 따라 국내산 쌀과 동일하게 관리됨.

제 3 장

쌀 품질유지기한 관련 국내외 선행 실험연구

1. 국내 연구 사례

1.1. 농촌진흥청 연구²

- 이 연구에서는 쌀의 고품질 유지기간을 도출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면서 지방산도, 신선도, 효소활성, 외관, 식미 등의 품질요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 변이와 향기성분 변이 등을 실험함.

1.1.1. 품질 변이 결과

- 실험 결과 우리나라 기상에 비추어 볼 때 백미 저장 조건은 6~9월에 가장

² 이춘기 외(2007)와 농촌진흥청 웹페이지상의 송진 외(2007)의 “쌀 최고품질 유지를 위한 최적 유통기간” 연구 결과를 요약한 자료임.

불리함. 7-9월에 상온저장한 쌀의 지방산도, 신선도, 페록시다아제 (Peroxidase) 활성의 변화가 가장 컸음. 품질변화가 가장 적은 백미의 저장 조건은 저장온도 15℃, 상대습도 70%이하임. 그러나 상온저장 시 6~8월에 평균 온도가 15℃ 이상, 6-7월에 상대습도가 70%이상임.

- 식미 실험에서 고온저장 시료가 저온저장 시료에 비해 부피증가율과 흡수율의 변화폭이 컸으며, 밥의 경도와 적색도가 저장기간의 증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증가함. 또한 저장시기가 적색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상온저장이 저온저장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음.
- 관능검사에서 저온저장한 쌀은 6주가 경과된 이후에도 밥맛이 저하되지 않으며, 보관조건이 가장 불리한 6월에 구입한 쌀의 검사 결과가 가장 좋지 않음. 외관 및 식미평가에서는 2월(저온)에 가장 품질 변화가 적고, 8월(고온)에는 외관 품질이 급속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10월의 경우 외관, 맛, 질감 등이 1주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음.

1.1.2. 향기성분 변이 결과

- 도정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향기 성분 변화를 검사한 결과 저온저장은 도정 이후 11주까지 대체로 변화가 안정적인 반면, 고온저장은 5주가 경과되면 안정적이지 않음.

1.1.3. 결과 종합

-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품질요소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고품질 유지기간은 10월-익년 4월은 도정 후 48 ± 2 , 5-6월 23 ± 3 , 7-9월은 16 ± 2 일 정도임.

1.2. 박동규 외 연구

- 박동규 외(2006)는 겨울(12~2월, 12주), 봄(3~5월, 12주), 여름(6~7월, 8주) 등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백미 품질변화를 실험함. 이 연구에서는 이화학적 특성 분석과 쌀밥의 관능적 품질평가를 수행함.

1.2.1. 겨울철 품질 변화

- 실험 결과 겨울철(12-2월)에는 쌀의 품질 변화가 크지 않으며, 백미의 지방산가는 저장 2주부터 증가하였으나 12주 이후에도 상품성 한계를 유지함. 품질평가도 지방산가 변화 양상과 유사하였음. 겨울철에 백미의 전반적인 품질 값은 8주 이후 급격하게 감소함. 이를 바탕으로 박동규 외(2006)는 겨울철 상미기간을 약 8주 정도로 제안함.
 - 밥맛 측면에서 상품성 한계는 전반적인 품질 값 6점을 기준으로 12주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1.2.2. 봄철 품질 변화

- 봄철(3~5월)에는 저장온도와 무관하게 현미 저장 쌀이 백미 저장 쌀에 비해 지방산가가 낮았음. 지방산가는 저장 6주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주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백미 상온저장 시 실저장(practical storage)과 지대 포장 저장 간에 지방산가가 차이가 있었음. 품질평가에서도 현미와 백미 저장 쌀 간에 관능적 품질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지방산가와 유사하게 저장 8주 이후부터 차이가 일관성이 있었음.
- 백미와 현미의 전반적인 품질이 6주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박동규 외(2006)는 봄철 백미의 상미기간을 6주로 제시함. 상품성 한계는 저장 후 12주에 도달함.

1.2.3. 여름철 품질 변화

- 여름철(6~7월) 저장 중 백미와 현미의 지방산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백미 저장 쌀이 현미 저장 쌀 보다 지방산가가 높았음. 상온저장한 백미가 저장 6주 이후부터 지방산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저온저장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고, 동일한 상온저장이더라도 현미 저장 쌀의 지방산가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품질평가 결과 여름철에는 저장 2주 이후부터 현미 저장 쌀이 백미 저장 쌀에 비해 관능적 품질이 높았음. 저장 8주에는 전반적으로 관능적 품질이 감소하고, 지방산가와 유사하게 특히 상온 저장한 백미의 관능적 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름철에는 저장 초기부터 전반적인 쌀의 품질이 낮았음. 백미의 경우 4주 이후 전반적인 품질의 감소가 있었으며, 상품성 한계는 저장 8주차에 도달함.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여름철(6~7월) 상미기간을 4주로 제안함.

1.2.4. 결과 종합

- 박동규 외(2006)의 연구에서는 계절별로 온도, 습도의 영향으로 상미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겨울철 상미기간은 약 8주, 봄철 6주, 여름철 4주 정도인 것으로 제안함. 그러나 상품성은 이보다 오래 유지되어 겨울철은 저장 12주, 봄철과 여름철은 상품성 한계가 각각 12주, 8주 정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일본 연구 사례

- 横江未央·川村周三(2008a, 2008b)의 연구에서는 화학적인 상태 변화를 바탕으로 한 조사와 관능(官能) 시험을 바탕으로 한 조사를 함께 실시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보관 온도별로 상미기한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는 시판 쌀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다양한 온도 조건하에서 저장한 후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의 변화를 살펴봄.
- 실험 결과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저장 기간이 경과하면서 쌀의 화학적 특성 변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였으나, 영상15℃ 이하에서는 화학적 특성 변화가 미미하였음. 화학적 특성 검사와는 달리 관능검사(외관, 향, 강도, 점성)에서는 저장 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 저하가 전반적으로 관찰되었음.
 - 측정 항목은 수분, 지방산도, FD측정치, 식미(食味)치, 호화(糊化)특성 등이었음.
 - 정곡의 외관과 향 검사에서는 영상25℃에 보관했던 쌀의 품질 저하가 뚜렷하였으며, 영상20℃에서는 약 6개월 후, 15℃이하에서는 약 12개월 후부터 품질저하가 관찰되었음.
 - 강도 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점성은 영상25℃에서는 약 5개월 후, 영상20℃에서는 약 6개월 후, 영상15℃ 이하에서는 약 1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품질저하가 발생하였음.
- 横江未央·川村周三(2008a, 2008b)에서는 화학적 특성과 관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쌀의 상미기한이 섭씨 영상25℃에서는 2개월, 20℃ 3개월, 15℃ 5개월, 5℃에서는 7개월이라고 제시함.

제 4 장

국내외 쌀 기한표시제도 운영 실태

1. 농식품 기한 표시 일반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다양한 표시관련 규정을 통해 식품표시에 관해 규정함. CODEX 식품표시 규정 중 포장식품 전반에 적용되는 표시 규정은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CODEX STAN 1-1985)”임.
- CODEX가 규정한 포장식품의 날짜표시 방식은 크게 ‘제조일자 표시방식’ ‘기한표시 방식’으로 구분됨. 제조일자 표시방식에는 제조일자 표시(date of manufacture)와 포장일자 표시(date of packaging)가 포함됨. 기한표시 방식은 제조일자, 포장일자 등 2개 제조일자 표시방식을 포함하여 유통기한(판매기한, sell by date), 품질유지기한(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및 소비기한(use by date, recommended last consumption date, expiration date) 등 총 5개 표시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국가별 포장식품 표시는 대체로 이러한 5개 표시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별 여건에 따라 실제 사용 용어, 날짜표시 등 표시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제조일자 표시는 대체로 기한표시와 병행하여 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비기한은 부패·변질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품질유지기한은 품질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제품에 적용함.

〈기한표시 방식 및 개념〉

용어		개념	
기한표시 방식	제조일자 표시방식	제조일자	식품이 제품으로 만들어진 날짜
		포장일자	식품이 판매될 용기에 포장된 날짜
	판매기한 (유통기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최종 날짜로, 해당 날짜 이후 가정에서 적절한 저장 기간이 남아 있음을 의미	
	품질 유지기한	제품이 완전한 시장성을 유지하고 특정 품질을 유지하는 최종기한으로, 해당 날짜 이후에도 품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	
	소비기한	적절한 저장·보관 조건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기대하는 품질특성이 보존될 수 있는 최종 일자로, 일반적으로 식품 섭취에도 건강 또는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	

자료: 김우선 외(2013: 29-30) 참조.

2. 국내 쌀 기한표시 실태

2.1. 농식품 기한표시 일반

- 농식품 표시 관련 법령 중 “식품위생법”은 식품표시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이 식품 표시기준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의무적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해야 함. 이밖에 품질유지기한은 밀가루, 잼류, 멸균음료, 다류(차), 벌꿀 등 특정 제품만을 대상으로 함. 우리나라는 소비기한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음.

2.2. 쌀 표시제도 운영 실태

-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근거하여 시행됨.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관리법”에 근거하여 미곡류, 맥류, 서류, 기타 미곡·맥류·서류의 압착물·분쇄물·가루·전분류 등에 대해 규정된 표시를 해야 함.
- 양곡표시사항은 의무표시사항과 임의표시사항으로 구분되며, 의무표시사항에는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등급 등이 있음.
 -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 일부 의무표시사항은 쌀, 현미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됨. 단백질함량의 경우 임의표시사항으로 쌀에만 해당됨.
- 양곡표시사항 중 낱짜(기한) 관련 표시사항에는 생산연도, 도정연월일(도정일자) 등이 있음. “양곡관리법”에 의해 쌀과 현미의 경우 생산연도와 함께 도정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생산연도: 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원료 양곡 수확연도 표시
 - 도정연월일: 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 먼저 도정한 연월일 표시
- 의무표시사항을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생산연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 표시 또는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 국산 미곡 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한 경우 위반 사안별로 과태료·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에 처함.

〈양곡표시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도입 목적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여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 유도	
법적 근거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0조의 4, 제32조(벌칙), 제36조(과태료)	
표시 의무자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	
표시 사항	① 품목 ② 중량 ③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④ 원산지 ⑤ 품종(쌀과 현미 해당) ⑥ 생산연도(쌀과 현미 해당) ⑦ 도정연월일(쌀과 현미 해당) ⑧ 등급 표시(흑미·항미를 제외한 멥쌀 해당) ⑨ 단백질(임의표시사항으로 쌀 해당)	
표시 위치 (포장 판매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은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 5킬로그램 이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글자 크기	의무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킬로그램 이상 포장양곡은 16포인트(24급) 이상, 10킬로그램 미만 포장양곡은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함. · 다만, 1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 가능
	임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크기 제한 없음(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고무인 등으로 표시 가능)

주: 2017년 10월 14일부터 ‘등급표시’를 특, 상, 보통으로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표시를 하고,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함(‘미검사’ 표시 금지). 그러나 2018년 10월 13일까지 기존 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2018. 1. 25.) 참조 정리함.

〈양곡표시사항 세부 내용〉

표시항목	내용
① 품목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
② 중량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제 양곡의 중량
③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생산, 가공, 판매원의 상호, 주소, 연락처
④ 원산지	국산은 국산, 국내산 표시, 외국산은 국가명, 국가명산
⑤ 품종	쌀, 현미가 수확된 연도
⑥ 생산연도	벼,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
⑦ 도정연월일	해당품종명(전체의 80% 이상 들어 있는 경우)
⑧ 등급	쌀 등급은 3단계(특, 상, 보통)
⑨ 단백질함량 (임의표시사항)	임의표시 사항(3단계 수, 우, 미)

자료: 네이버 블로그 자료(<https://blog.naver.com/kjj650/221103593959>: 2018. 2. 7.)

〈양곡표시제 일괄표시〉

품 목	쌀	중 량	20kg
품 종	추청	단백질함량(임의표시)	수, 우, 미
등 급	특, 상, 보통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
생산연도	2014	도정 연월일	2015. 7. 7.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00도 00군 00로 00	
	상호명(성명)	00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31)000-0000	

*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 표시

* 원산지 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표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law.go.kr/LSW/lsByllInfoPLinkR.do?lsiSeq=98937&lsNm=%EC%96%91%EA%B3%A1%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171116&bylEfYdYn=Y>: 2018. 3. 14)

3. 해외 주요국의 쌀 기한표시 현황

3.1. 대만

3.1.1. 농식품 기한표시 일반

- 대만의 농식품 기한표시를 포함한 표시 관련 사항은 식품기본법의 성격을 하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양식표시규정(糧食標示辦法, Regulations for Food Labeling)”, “양식관리법” 등을 근거로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위생서,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량서 등에서 관할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의해 일반식품은 ‘유효일자’를 표시하여야 함. 동법에 근거하여 기한표시는 용기나 포장지 위에 인쇄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표시 방식은 년, 월, 일을 표시하는 것임. 그러나 식품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의 유효일자는 년과 월만 표시하면 되고 당월 말일을 유효기간 마지막 날로 표시할 수 있음.

- 유효일자는 업체에서 제품 포장과 보관 상황 등에 따라 자체 결정하며, 업체는 기한 내에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기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함.
- 생우유, 탈지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가당 탈지 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유, 합성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반드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식품표시 세부사항〉

- 식품 및 식품원료의 용기 또는 바깥포장은 중문과 통용부호를 써서 아래 사항을 확실하게 표시하여야 함.
 1. 품명
 2. 내용물 명칭; 두 종류 이상의 혼합물인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분리해서 표시
 3. 순량(net weight), 용량 혹은 수량
 4. 식품첨가물 명칭; 두 종류 이상의 기능성 식품첨가물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첨가물 명칭을 분리하여 표시
 5. 제조업체 또는 국내책임업체(수입물품의 경우)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국내인증농산물의 검증원; 중앙농업주관기관에 의해 공개적으로 규정된 생산시스템
 6. 원산지(국)
 7. 유효일자
 8. 영양표시
 9. 유전자조작식품원료
 10. 기타 중앙주관기관 공고 사항

3.1.2. 쌀 표시제도 운영 실태

- 대만 양곡 표시제도는 “양식관리법(糧食管理法)”, “양식표시규정(糧食標示辦法)”,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됨. 양식표시방법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량서, 시판용 포장식품 표시는 위생복지부 위생서 담당임.
- 쌀 표시제도의 경우 양곡 포장 및 용기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양식관리법”, “양식표시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됨. 표시사항은 의무와 임의표시사항으로

구분됨. 우리나라와는 달리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기한표시에는 정미일자와 보존기한이 있음.

- 대만은 쌀에 대만산 우수 농산물 인증 표시인 CAS인증 양질미로 표시할 경우 “양식관리법” 임의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정미일자(**grinding date**)는 양곡제조년월일, 보존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식용안전안심까지의 기한(**to the safe and secure for edibles**)을 의미함.

- 보존기한은 브랜드, 품종과 관련이 없으며 양곡유통업자(**food dealer**)가 포장, 보관조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이며 진공포장 시 9개월 정도(시중에 12개월 기한표시 제품도 판매)로 표시하고 있음.

〈대만 양곡 표시 사항〉

법령	의무표시사항	임의표시사항
양식 관리법	① 품명 ② 품질규격(1-3등급) ③ 산지 ④ 중량 ⑤ 정미일자 ⑥ 보존기한 ⑦ 생산자 주소·전화번호 등 정보	① 품종 ② 기작별 ※ CAS인증쌀은 의무표시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① 열량 ② 단백질 ③ 지방 ④ 탄수화물 ⑤ 나트륨	가공업체가 표시하기를 원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 양곡유통업자가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내 시정을 명령하며,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함. 벌금은 위반사항 적발시마다 반복적으로 적용됨.
- 이밖에 규정 위반 내용이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시중(매대)에서 3일 내 철거, 한 달 내 회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 위반내용이 중대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및 양곡유통업자 등기를 전부 또는 부분 취소하여 1년 이내 재신청을 금지함.

3.2. 중국

3.2.1. 농식품 기한표시 일반

- 중국 정부는 식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이하 “중국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관리함. “식품안전법”은 포괄적으로 식품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의 기본방침을 나타냄. 그러나 중국은 식품표시에 관한 사항은 단일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음. 중국의 식품기한표시제도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품질안전법”, “쌀 국가표준(GB/T1354-2009)” 등이 있음.
-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사전포장식품의 경우 라벨표시는 식품명칭, 원료배합표, 순함량과 규격, 생산자와 (또는) 위탁판매자 명칭·주소·연락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보관조건, 식품생산허가증명번호, 생산품표준부호 및 기타표시 필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사전포장식품의 기한표시는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표시임. ‘포장재 어떤 부분을 참조하세요’의 형식을 채택한다면 해당 포장재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하도록 함. 일자 표시는 별도 스티커 부착, 보충 인쇄, 수정 등이 허용되지 않음.
 - 품질보증기한: 라벨에 표시된 저장조건에서 사전포장식품이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이 기한 내 생산품은 판매에 완전히 적합하고, 특유의 품질을 완전히 유지함(GB 7718-2004).
 - 동일 포장 안에 생산일자와 품질보증 기한이 다른 식품이 섞여 있을 경우 바깥 포장 상 표시의 품질보증기한은 보증기간이 가장 짧은 식품의 보증기한으로 계산하여야 함.
 - 연·월·일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이 순서 표시가 아닐 경우, 그 주석을 상세히 달아야 함.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 중 상표표시 관련 사항]

- **의무표시사항:** ① 식품 명칭 ② 원료배합표 ③ 순합량과 규격 ④ 생산자(또는 위탁판매자) 명칭·주소·연락처 ⑤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⑥ 보관조건 ⑦ 식품생산허가증명번호 ⑧ 생산품표준부호 ⑨ 기타표시 필요 내용 반드시 포함.
 - 동일 포장 내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이 다른 식품이 혼합된 경우 포장 상 표시의 품질보증기한은 보증기간이 가장 짧은 식품의 보증기한으로 계산
 - 연·월·일 순서로 표시
- **품질보증기한 표시 형식**
 - ‘~전이 식용(음용)에 가장 좋음’, ‘~전 식(음)용 하기에 가장 좋음’, ‘~전이 가장 좋음’, ‘~이 낱짜 이 전이 가장 좋음’. ‘품질보증기한 ○○개월(또는 ○○일, ○○주일, ○○년)

3.2.2. 쌀 표시제도 운영 실태

- 중국 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T 1354-2009)”이며, 국가표준(GB7718-2011)에 부합해야 함. 상온에서 쌀 제품 품질보증기한은 3개월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쌀 국가표준 GB/T1354-2009). 일반적으로 시중 포장 쌀의 유통기한은 브랜드, 품종, 포장형태별(진공포장, 소포장, 일반포장 등)로 차이가 존재함.
 - 3개월 이상의 구체적인 기한은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에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표시는 국가표준GB7718-2011 준용함.
 - 일반적으로 PE(Polyethylene, 폴리에틸렌)포장 18개월, PP(Polypropylene, 폴리프로필렌)포장 12개월 정도까지 적용
- 품질보증기한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위법의 소득 및 위법으로 제조·판매 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 제조·판매에 사용된 기구, 설비, 원료 등의 물품을 몰수함. 또한 불법 제조·판매 식품의 가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허가를 취소함.

3.3. 일본

- 일본의 식품 표시에 관한 업무는 ‘소비자청’이 주관하며, 기존에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던 농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2013년 “식품표시법”을 제정(2015년 시행)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함. 식품 표시기준은 “식품표시법”에 의거하여 내각 총리대신이 내각부령으로 규정함. 다만 판매 용도로 제공하는 식품에 관한 표시 기준을 규정할 때 사전에 후생노동장관, 농림수산장관 및 재무장관과 협의하고,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이외에 식품표시 관련 규정으로 “식품표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정령”, “식품표시기준”(내각부령) 등이 있음.

- 일본의 경우 농식품 기한표시는 일반적으로 ① 소비기한과 ② 상미기한으로 표시함. ‘소비기한’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존한 경우, 부패, 변패, 기타 품질이 나빠져서 안전성이 결여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연월일을 말함. ‘상미기한’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존한 경우, 부패, 변패, 기타 기대되는 모든 품질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한을 나타내는 연월일을 말한다. 단, 해당 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이들 품질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음.

〈일본의 농식품 기한표시 일반 사항〉

표시사항	대상식품	주요 내용
소비 기한	품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쉬운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기한 용어 뒤에 연월일 표시
상미 기한	소비기한 표시 이외의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미기한 용어 뒤에 연월일 표시(연월일 순) ■ 제조 또는 가공일로부터 상미기한까지의 기한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상미기한이라는 글자를 붙인 그 연월일을 연월 순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상미기한이라는 글자를 붙인 그 연월일 표시 대신 가능
표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분, 추잉껌, 냉동과일, 설탕, 아이스크림류, 소금(조미료), 주류, 음료수 및 청량음료수, 얼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웹페이지 자료(<http://mfds.go.kr/index.do?mid=1492&seq=20410>: 2018. 3. 12.), 식품안전정보원(2016) 참조.

- 포장 쌀의 경우 일반 농식품과 달리 명칭, 원료현미(산지, 품종, 산년, 사용 비율), 내용량, 정미연월일, 사업자 이름 또는 명칭·주소·전화번호 등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연산, 정미연월일이 기한표시의 역할을 함.
 - 등급(1~3등급·규격외)은 유통·판매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
 - 단일 원료 쌀인 경우 사용 비율 사항 삭제
 - 현미의 경우 ‘정미연월일’을 ‘조제연월일’로 변경
 - 수입품으로 ‘조제연월일’ 또는 ‘정미연월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양식 중 ‘조제연월일’ 또는 ‘정미연월일’을 ‘수입연월일’로 변경
 - 표시자가 정미 공장인 경우 ‘판매자’를 ‘정미공장’으로 변경

3.4. 기타 국가

3.4.1. EU

- 유럽연합(EU)은 “(EC) No178/2002”(이하 일반식품법 178/2002)을 기본법으로 하여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일반 법규(Regulation)와 집행을 위한 법규(Implementing Regulation)로 이원화하여 운영함. 일반식품법은 식품안전과 표시를 포함한 식품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일반요건을 담고 있음.
- EU의 식품표시 관련 법률은 모든 영역의 식품에 적용되는 수평적인 법률과 개별식품에 적용되는 수직적 법률로 구분됨. 식품표시에 관한 일반적이고 주요한 수평적 법률은 ‘일반식품표시지령 2000/13/EC’이며 의무 표시 항목을 규정함. 수직적 법률에는 판매 기준·규칙에 관련된 법률이 있으며, 판매 기준 이외에도 일부 개별 식품에 대한 법률이 존재함.
- 식품 표시는 EU 보건소비자총국(DG SANCO)이 담당함. 그러나 식품 표시

중 보호 원산지 호칭(PDO)·보호 지리적 표시(PGI)·전통적 특성 보증(TSG) 및 유기 농산물·식품 표시는 농업 총국이 담당함.

- EU는 부패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use by date)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상미기한)등을 표시하도록 함. 부패하기 쉬워서 단기간 후에 인간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식품의 경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 소비기한은 육류, 유제품, 생선류 등, 쌀을 포함한 이 외의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함. 품질유지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는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음(안전성이 보장되고 외관이 오해 소지가 없는 경우 판매 가능).

3.4.2. 호주

- 호주의 경우 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은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FSANZ)에 의해 관리됨. 관련 법령에는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등이 있음. 호주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을 근거로 소비기한(use by date)과 품질유지기한(best-before date) 표시를 적용함. 쌀의 경우 품질유지기한(best-before date) 적용 대상임.
 - 소비기한: 건강 또는 안전상 일정기한 이후의 섭취가 적절하지 않은 식품에 표시하며, 법적으로 소비기한 이후 판매 금지
 - 품질유지기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되며,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소비가 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판매 가능
-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의 표시방법은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제품과 이상인 제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품질유지기한이 2년 이상인 경우 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품질수명이 7일 미만인 빵 제품은 별도표시(best-before date, baked-for date, baked-on date)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이 적용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날짜

- 표시는 일, 월 순으로 표현하며, 최소한 일과 월로 구성하도록 규정
- 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이 적용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상인 경우 날짜 표시는 월, 연도순으로 표현하며, 최소한 월과 연도로 구성
 - 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은 문자로 표시 가능한 월을 제외하고 숫자 형태로 표시해야 함. 월이 문자로 표현된 경우, 월은 일 앞에 올 수 있음.
 - 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에 표현된 일, 월, 연도는 구별 가능해야 함.

제 5 장

수요 측면에서의 쌀 표시 이용 실태와 기한표시제도 평가

1. 소비자 인식과 평가

1.1. 조사 개요

-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의 쌀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 가구원 700명(가구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2018. 1. 8.~2018. 1. 22.))를 실시함.
 - 응답자는 남성 48.1%, 여성 51.9%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50대 이상이 46.3%, 40대가 26.6%, 30대 19.3%, 20대 7.9% 순임.

1.2. 조사결과

1.2.1. 쌀 구입 및 소비 행태

- 소비자들은 주로 ‘2개월 1회 정도’ 또는 ‘3~4개월 1회 정도’ 쌀을 조달하며,

‘대형할인점’, ‘통신판매’,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을 통한 구입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임. 주로 구입하는 쌀의 중량은 ‘20kg’ 또는 ‘10kg’이었으며, 쌀 구입 결정 시 주로 ‘구입가격’, ‘생산년도’, ‘도정일자’를 고려하였음.

- 소비자들은 주로 쌀을 구입한 후 ‘보관용기에 별도로 담아 실온 보관’하거나 ‘구입 시 포장상태 그대로 실온 보관’하였음. 쌀 품질 유지를 위해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쌀 품질 유지를 위해 ‘햇빛 안드는 곳에 보관’하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었음.

〈쌀 조달(구입 또는 친지/지인으로부터 얻음) 빈도〉

단위: %

구분	1개월 1~2회 이상	2개월 1회 정도	3~4개월 1회 정도	5~6개월 1회 정도	7~12개월 1회 정도	합계
비중	15.7	41.7	28.1	9.7	4.7	100.0

〈쌀 주 구입 장소〉

단위: %

구분	비중
대형할인점(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클럽 등)	38.0
통신판매(인터넷, 전화주문, 홈쇼핑 등)	18.9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15.2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14.5
쌀 전문판매점	4.2
재래시장/전통시장	4.1
친환경 식품 전문점(생협, 유기농전문점, 초록마을, 한살림 등)	3.3
백화점 내 식품코너	0.9
편의점	0.1
기타	0.8
합계	100.0

주: 1순위 가중치 200%, 2순위 100% 적용하여 산정.

〈주로 구입하는 쌀의 중량〉

단위: %

구분	1~3kg	4kg	5kg	10kg	20k	40kg
비중	4.9	3.7	10.1	36.9	44.1	0.3

〈쌀 구입시 고려 사항〉

단위: %

구분	비중
구입가격	17.5
생산년도(예: 2017년산)	16.6
도정일자(도정년월일)	12.4
원산지(예: 국내산, 중국산, 미국산)	12.3
품종(예: 혼합미, 일반미, 고시히카리, 신동진 등)	11.1
생산지역(예: 경기미)	8.5
제품 브랜드(예: 임금님표 이천쌀, 햇사래 경기미 등)	7.5
등급(특, 상, 보통, 미검사로 표시)	4.7
인증 여부(무농약·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 우수농산물(GAP), HACCP, 지자체 인증 등)	3.6
쌀의 외관(선별상태 등을 포장지를 통해서 확인)	1.4
생산·가공판매자	1.3
포장상태	1.1
단백질 함량(수, 우, 미, 미검사로 표시)	0.6
기타	1.3
합계	100.0

주: 1순위 가중치 200%, 2순위 100% 적용하여 산정.

〈쌀 보관방법〉

단위: %

구분	구입 시 포장상태 그대로 실온 보관	구입 시 포장상태 그대로 냉장 보관	구입 후 보관용기에 별도로 담아 실온 보관	구입 후 보관용기에 별도로 담아 냉장 보관	기타
전체	37.9	5.7	43.6	12.7	0.1

1.2.2. 쌀 품질 관련 인식

- 쌀 품질에 대한 불만족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거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주요 불만족 경험 요인은 ‘오래 묵은 쌀 느낌’이 있거나, ‘벌레 발생’, ‘싸라기 쌀 포함’ 등이었음. 그러나 불만족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반품을 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9.6%에 불과하였음.
 - 쌀 반품의 주요 요인은 쌀 품질에 대한 불만족 경험의 요인과 유사하게 ‘오래 묵은 쌀 느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였음.

〈쌀 품질에 대한 불만족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전체	45.0	55.0

〈쌀 품질에 대한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단위: %

구분	비율
오래 묵은 쌀 느낌	38.7
벌레발생	17.2
싸라기 쌀 포함	12.4
구입 후 도정일자가 많이 경과된 제품임을 확인	8.6
변질	8.5
이물질 혼입	5.0
백미 이외의 다른 종류 쌀 섞임	3.4
포장지에 도정일 이중 부착 등 표시 오류	2.4
중량미달	2.1
찰기 부족/식감 불만족	1.6
합계	100.0

주: 쌀 품질과 관련하여 ‘불만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15명 대상

〈구입한 쌀에 대한 불만족으로 반품한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계
비중	9.6	90.4	100.0

〈쌀 반품 사유(중복 응답)〉

단위: %

구분	비율
오래 묵은 쌀 느낌	31.3
벌레발생	19.8
이물질 혼입	13.7
변질	11.5
싸라기 쌀 포함	11.5
구입 후 도정일자가 많이 경과된 제품임을 확인	5.3
백미 이외의 다른 종류 쌀 섞임	3.8
중량미달	1.5
포장지에 도정일 이종 부착 등 표시 오류	1.5
합계	100.0

주: 쌀을 '반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7명 대상

1.2.3. 농식품 기한표시 인식 및 활용 일반 실태

-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기한 표시 관련 용어들 중에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미기한(1.78점, 4점 척도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음.
- 또한 기한표시의 유형 및 개념과 상관없이 식품에 표시된 기한이 지난 경우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기한내로 섭취해야 함을 의미하는 표시라고 인지하였으며, 기한표시에 관한 정확한 이해 수준도 높지 않았음.

〈식료품 기한 표시 인지 정도(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유통기한	소비기한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판매기한	보존기한
비중	3.26	2.80	1.78	2.13	2.39	2.41

주: 전혀 모름=1, 들어본 적은 있음=2,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편임=3, 매우 잘 압=4

〈식품 기한표시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는 기한'으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유통기한	소비기한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판매기한	보존기한
비중	87.9	76.1	64.7	68.7	82.9	77.0

주: '예'(판매할 수 없는 기한으로 인지) 응답만 정리함.

〈식품 기한표시를 '표시된 기한내로 섭취해야 함'으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유통기한	소비기한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판매기한	보존기한
비중	64.6	81.0	66.7	73.4	60.4	82.7

주: '예'(표시된 기한 내로 섭취해야 하는 기한으로 인지) 응답만 정리함.

〈기한표시 이해 수준〉

단위: %

구분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82.7	13.6	3.7
유통기한은 식품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35.7	48.6	15.7
유통기한이란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개봉하지 않은 상태일 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한이다	58.9	31.9	9.3
유통기한은 식품별 특성에 맞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32.6	46.7	20.7
품질유지기한은 부패, 변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에 표시한다	53.6	16.1	30.3
품질유지기한은 섭취가능한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을 알려준다	67.9	10.3	21.9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43.6	17.0	39.4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68.1	12.7	19.1
상미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알려준다	37.9	7.9	54.3
평균 정답률	35.0%		

주: 정답은 음영표시함.

-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시 대체로 식품에 부착된 기한표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대체로 제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용(섭취)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고르기 위해 노력’하였음.
 - 식품의 기한 만료가 임박한 경우 해당 제품 구매 의향이 거의 없고, 기한 만료 임박시 가격 할인을 해도 구매 의향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식품 구입시 기한표시 사항 확인 정도〉

단위: 점

구분	5점 척도
전체	4.24

주: 전혀 확인하지 않음=1, 항상 확인함=5

〈제품 선택 시 기한표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대체로 제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용(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고른다	대체로 이용(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고른다	대체로 표시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라면 기한(날짜)에 별로 구매받지 않고 구입한다
전체	58.1	38.2	3.7

주: 기한표시 사항 확인 여부에서 ‘보통’, ‘확인하는 편’ ‘항상 확인’으로 응답한 570명 대상 조사

〈식품 표시 기한별로 만료가 임박한 경우 제품 구매의향(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
구매의향	2.90	2.72	2.69
가격 할인시 구매의향	3.53	3.19	3.13

주 1) 의향이 전혀 없음=1, 의향이 매우 있음=5

2) 품질유지기한과 상미기한은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활용되어, 이 문항에서는 단일하게 제시함.

1.2.4. 쌀 품질 및 기한표시 관련 인식과 실태

- 쌀 구입 시 표시사항 중 생산연도, 도정일자 확인 비중이 가장 높았음. 소

비자들은 쌀 구입시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최근 도정일자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은 대체로 쌀의 구매 시 포장지에 표시된 도정일자가 1달 정도 까지 경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또한 쌀 구입시 용인 가능한 최대 경과기한은 3-4주일, 2주일, 2개월, 3-4개월 순이었음.

〈쌀 구입 시 확인하는 표시사항〉

단위: %

구분	비중
생산연도	33.7
도정일자(도정연월일)	26.4
원산지	16.9
품종	13.8
등급	7.9
단백질함량	1.2
합계	100.0

주 1) 1순위 가중치 200%, 2순위 100% 적용하여 산정.

2) 표시사항 확인 정도에 '보통', '보통 확인함', '항상 확인함'을 응답한 653명 대상

〈쌀 구입시 도정일자 확인 및 최근 도정일자 제품 구매 노력 정도(비중)〉

단위: %, 점

구분	전혀 안함	안하는 편임	보통 이다	하는 편임	항상 함	평균 (5점 척도)
도정일자 확인 정도	2.3	4.0	21.1	39.4	33.1	3.85
최근 도정일자 쌀 구매 노력 정도	0.2	1.5	20.1	44.8	33.4	4.10

〈평소 구매 쌀 제품의 도정일자 경과 기한〉

단위: %

구분	1주일	2주일	3-4주일	2개월	3-4개월	5-6개월	7-12개월	기타
비중	20.7	20.4	24.2	13.7	11.9	4.7	3.0	1.2

주: 도정일자 확인을 '보통임', '보통 그러함', '항상 그러함'에 응답한 656명 대상

〈표시된 도정일자에서 구매의사가 있는 최대 경과 기한〉

단위: %

구분	1주일	2주일	3-4주일	2개월	3-4개월	5-6개월	7-12개월	13개월 이상	기타
비중	8.1	18.6	24.7	17.6	16.4	6.9	5.7	1.0	1.0

- 소비자들은 적정한 품질유지기한은 평균 6.8개월, 소비기한 6.0개월, 유통기한은 4.7개월 정도로 평가함. 또한 계절별로 기한을 달리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필요성 인식은 감소하였음. 봄철의 경우 표시 유형별로 기한이 4.3~5.6개월, 여름철 2.7~3.8개월, 가을철 4.6~5.9개월, 겨울철 5.7~7.1개월 정도인 것으로 평가함.

〈각 기한별 쌀 도정일로부터 적절한 경과 시점〉

단위: %

구분	1주	2주	3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품질유지기한	2.9	3.1	1.1	9.9	8.7	11.3	3.0	4.1	18.3
소비기한	3.0	4.3	1.9	9.9	10.4	12.0	4.4	3.9	18.4
유통기한	5.1	5.3	3.0	14.9	11.6	13.3	3.0	3.1	19.3

구분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이상	평균 개월수
품질유지기한	1.3	1.0	1.4	2.6	1.3	26.0	4.0	6.8
소비기한	1.3	1.4	1.6	3.1	1.1	20.4	2.9	6.0
유통기한	1.1	1.0	1.6	2.9	0.6	13.3	1.0	4.7

〈쌀의 기한 정보 제공시 계절별 표시 차별화 필요성과 가격 인상시 필요성(5점척도)〉

단위: 점

구분	평균
기한표시 계절별 차별화 필요성	4.04
가격 인상 동반시 계절별 차별화 필요성	3.37

〈계절별·기한별 쌀 도정일로부터 적절한 경과 시점(1)〉

단위: %

구분		1주	2주	3주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봄철	품질유지기한	2.1	3.2	2.9	9.3	11.0	13.2	4.7	5.1	16.9
	소비기한	2.2	4.0	3.8	10.0	11.2	15.0	5.1	6.2	17.0
	유통기한	3.7	5.9	5.1	12.8	13.1	13.7	5.0	6.0	16.2
여름철	품질유지기한	5.1	7.0	5.6	15.0	12.3	14.5	8.2	2.8	12.2
	소비기한	5.7	8.4	5.7	16.0	14.4	14.8	7.8	3.7	10.6
	유통기한	8.4	12.2	6.3	18.6	11.7	14.8	7.2	2.9	11.0
가을철	품질유지기한	1.8	3.7	3.1	8.2	10.1	11.2	5.7	5.7	16.4
	소비기한	1.8	4.6	3.2	9.1	10.1	12.5	5.9	6.9	17.2
	유통기한	2.5	6.9	4.8	11.2	11.2	12.9	5.6	6.0	16.3
겨울철	품질유지기한	1.2	2.1	2.3	6.2	7.9	10.6	5.3	4.0	14.4
	소비기한	1.3	2.3	2.9	6.8	9.0	10.4	5.0	5.6	15.0
	유통기한	1.9	4.0	3.8	10.6	8.5	10.7	5.7	4.8	15.6

주: '쌀의 기한 정보 제공시 계절별 표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보통임', '보통 필요가 있음', '매우 필요 있음'에 대해 응답한 681명 대상

〈계절별·기한별 쌀 도정일로부터 적절한 경과 시점(2)〉

단위: %

구분		7개월	8개월	9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3 개월 이상	평균개월 수
봄철	품질유지기한	2.1	3.7	3.8	4.3	1.0	15.1	1.6	5.6
	소비기한	1.8	3.2	2.9	4.4	0.4	11.9	0.9	5.1
	유통기한	1.0	2.9	1.5	4.6	0.7	7.3	0.6	4.3
여름철	품질유지기한	1.3	3.5	3.4	4.1	0.3	4.0	0.6	3.8
	소비기한	1.2	3.2	1.6	3.8	0.4	2.3	0.3	3.4
	유통기한	0.6	1.9	0.6	1.9	0.1	1.5	0.1	2.7
가을철	품질유지기한	1.8	4.1	3.5	5.6	1.3	16.0	1.8	5.9
	소비기한	1.6	3.4	3.8	6.0	0.6	12.0	1.3	5.4
	유통기한	1.0	3.8	3.5	4.7	0.3	8.5	0.7	4.6
겨울철	품질유지기한	2.3	6.0	2.3	5.0	1.5	25.3	3.7	7.1
	소비기한	2.8	6.2	2.8	5.3	2.6	20.0	2.1	6.5
	유통기한	2.3	6.0	2.3	5.0	1.8	16.0	0.9	5.7

주: '쌀의 기한 정보 제공시 계절별 표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보통임', '보통 필요가 있음', '매우 필요 있음'에 대해 응답한 681명 대상

- 소비자들의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3개 기한표시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이 대체로 비슷하며, 기한 관련 정보 이외에 쌀 포장에 ‘보관 방법’, ‘표시항목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함.

〈현재 제공되는 정보(생산년도, 도정일자) 외에 추가정보 제공시 각 정보별 필요 정도 (5점 척도)〉

단위: %, 점

항목	전혀 필요없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유통기한	1.4	3.4	27.6	41.4	26.1	3.87
소비기한	1.6	5.1	25.3	40.4	27.6	3.87
품질유지기한	1.9	4.7	30.9	42.1	20.4	3.75

주: 전혀 필요 없음=1, 매우 필요함=5

〈쌀 포장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정보(중복응답)〉

단위: %

구분	보관방법 정보	표시 항목 구체적 의미	영양표시	기타	없음
전체	63.3	62.7	29.4	0.4	5.4

주: 기타는 ‘수입쌀 혼합비율’, ‘GMO 여부’, ‘등급기준에 대한 설명’ 등

2. 외식 및 급식업체 인식과 평가

2.1. 조사 개요

- 전국 17개 시/도 외식업체 46개(76.7%)와 급식업체(급식소) 14개(23.3%) 등 60개 업체에 대해 방문 및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2018. 2. 12.~2018. 3. 12.).

2.2. 조사결과

- 외식업체는 식재료전문마트, 개인도매상, 급식업체는 식재료유통법인, 식재료유통기업을 통한 쌀 구입 비중이 높았음. 외식업체는 월 2-3회 또는 일주일에 1-2회 구입 비중이 높은 반면, 급식업체는 일주일에 1-2회, 월2-3회 순으로 구입 비중이 높았음. 또한 대체로 구입가격, 생산년도, 생산지역을 주로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쌀 주 구입 장소〉

단위: %

구분	전체	업소 유형	
		외식업체	급식업체
식재료유통법인	21.7	15.2	42.9
식재료전문마트	21.7	23.9	14.3
개인도매상	15.0	17.4	7.1
식재료유통대기업	10.0	4.3	28.6
온라인거래	10.0	13.0	-
일반대형마트	6.7	8.7	-
산지직거래	6.7	6.5	7.1
전통시장	5.0	6.5	-
일반 슈퍼마켓(소매점)	3.3	4.3	-
합계	100.0	100.0	100.0

주: 일반 슈퍼마켓(소매점)은 동네중소형 슈퍼마켓, 대기업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등을 포함함.

〈쌀 구입 빈도〉

단위: %

구분	매일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1-2회	월2-3회	월1회	
						전체
업소 유형	외식업체	4.3	15.2	28.3	34.8	17.4
	급식업체	-	7.1	71.4	21.4	-

〈쌀 구입시 고려 사항〉

단위: %

구분	전체	업소 유형	
		외식업체	급식업체
구입가격	23.1	20.7	31.0
생산년도	17.5	19.6	10.7
도정일자	11.1	12.0	8.3
원산지	8.6	8.3	9.5
품종	7.2	6.5	9.5
생산지역	14.2	12.3	20.2
제품 브랜드	9.2	10.5	4.8
등급	3.3	3.3	3.6
인증 여부	0.8	1.1	-
쌀의 외관	2.8	3.6	-
생산·가공판매자	0.8	1.1	-
포장상태	-	-	-
단백질 함량	-	-	-
기타	1.4	1.1	2.4
합계		100.0	

주: 1순위 가중치 300%, 2순위 200%, 3순위 300% 적용하여 산정

- 외식업체의 경우 구입한 쌀을 주로 짐칸에 덮개가 없는 운반 차량(비밀폐차량), 급식업체는 냉장(저온) 운반 차량을 이용 비중이 높은 편임. 보관은 외식·급식업체 모두 구입 시 포장상태 그대로 실온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입 쌀 운반 방법〉

단위: %

구분	픽업트럭 등 짐칸에 덮개가 없는 운반 차량 이용	승합차 등 제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운반 차량 이용	냉장(저온) 운반 차량
전체	50.0	30.0	20.0
업소 유형	외식업체	30.4	15.2
	급식업체	28.6	35.7

〈구입 쌀 보관 방법〉

단위: %

구분		구입 시 포장상태 그대로 실온 보관	구입 시 포장상태 그대로 냉장 보관	구입 후 보관용기에 별도로 담아 실온 보관	구입 후 보관용기에 별도로 담아 냉장 보관
전체		75.0	3.3	20.0	1.7
업소 유형	외식업체	73.9	0.0	23.9	2.2
	급식업체	78.6	14.3	7.1	0.0

1.2.2. 기한표시 이용 실태

- 급식업체가 외식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쌀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며, 전체적으로 도정일자, 품종, 생산연도를 주로 확인하였으며, 최근 도정일자의 쌀을 구매하기 위해 대체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포장지에 표시된 도정일자가 1주일 정도 경과한 제품의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이며, 구매 의사가 있는 도정일자의 최대 경과 기한의 경우 외식업체는 5-6개월, 3-4주일, 급식업체는 2개월 또는 일주일 순이었음.

〈주요 확인 표시〉

단위: %

구분	전체	업소유형	
		외식업체	급식업체
품종	22.2	19.4	28.6
등급	5.2	3.2	9.5
생산연도	21.5	26.9	9.5
도정일자(도정연월일)	32.6	32.3	33.3
단백질함량	0.7	1.1	0.0
원산지	17.8	17.2	19.0
합계		100.0	

주: 1순위 가중치 200%, 2순위 100% 적용하여 산정

〈최근 도정일자(도정연월일) 구매 노력 정도(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전체	업소 유형	
		외식업체	급식업체
평균	3.87	3.76	4.21

주: 전혀 그렇지 않음=1, 항상 그러함=5

〈평소 구매 쌀 제품의 도정일자 경과 기한〉

단위: %

		1주일	2주일	3-4주일	2개월	3-4개월	5-6개월
전체		41.8	10.9	14.5	10.9	14.5	7.3
업소 유형	외식업체	31.7	12.2	12.2	14.6	19.5	9.8
	급식업체	71.4	7.1	21.4	-	-	-

주: 도정일자 확인을 '보통임', '보통 그러함', '항상 그러함'에 응답한 55개 업체 대상.

〈표시된 도정일자에서 구매의사가 있는 최대 경과 기한〉

단위: %

		일주일	이주일	3-4주일	2개월	3-4개월	5-6개월	기타
전체		16.7	16.7	18.3	13.3	8.3	18.3	6.7
업소 유형	외식업체	15.2	13.0	17.4	8.7	10.9	23.9	8.7
	급식업체	21.4	28.6	21.4	28.6	-	-	-

- 외식업체와 급식업체들은 대체로 기존의 생산년도, 도정일자 이외에 추가적인 기한표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외식업체는 유형별 기한표시 중에서 소비기한, 급식업체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함.

〈추가 기한표시 도입 필요성〉

단위: %, 점

구분	평균(5점 척도)	
전체	3.70	
업소유형	외식업체	3.76
	급식업체	3.50

주: 전혀 필요 없음=1, 매우 필요함=5

〈현재 제공되는 정보(생산년도, 도정일자) 외에 추가정보 제공시 각 정보별 필요정도 (5점 척도)〉

단위: %, 점

구분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전체		3.80	3.88	3.87
업소유형	외식업체	3.83	4.02	3.91
	급식업체	3.71	3.43	3.71

주: 전혀 필요 없음=1, 매우 필요함=5

- 전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평균적으로 2.50개월~5.47개월(전체 4.78개월), 소비기한은 4.57개월~7.33개월(6.68개월), 품질유지기한 6.79개월~9.09개월(8.55개월) 정도라고 평가함. 계절별 기한 차별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실제 표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각 기한별 쌀 도정일로부터 적절한 경과 시점〉

단위: %, 개월

구분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전체	외식업체	급식업체	전체	외식업체	급식업체	전체	외식업체	급식업체
1주	1.7	2.2	-	-	-	-	-	-	-
2주	1.7	2.2	-	-	-	-	-	-	-
3주	1.7	2.2	-	-	-	-	-	-	-
1개월	21.7	19.6	28.6	10.0	13.0	-	6.7	8.7	-
2개월	13.3	4.3	42.9	8.3	2.2	28.6	1.7	-	7.1
3개월	10.0	10.9	7.1	15.0	10.9	28.6	11.7	8.7	21.4
4개월	3.3	4.3	-	6.7	6.5	7.1	5.0	4.3	7.1
5개월	6.7	4.3	14.3	5.0	2.2	14.3	6.7	4.3	14.3
6개월	20.0	23.9	7.1	18.3	21.7	7.1	18.3	19.6	14.3
7개월	-	-	-	-	-	-	-	-	-
8개월	-	-	-	-	-	-	3.3	4.3	-
9개월	-	-	-	1.7	2.2	-	-	-	-
10개월	5.0	6.5	-	5.0	6.5	-	5.0	4.3	7.1
11개월	-	-	-	-	-	-	-	-	-
12개월	15.0	19.6	-	26.7	30.4	14.3	31.7	32.6	28.6
13개월 이상	-	-	-	3.3	4.3	-	10.0	13.0	-
평균 개월수	4.78	5.47	2.50	6.68	7.33	4.57	8.55	9.09	6.79

〈계절별 표시 차별화 필요성과 표시 어려움〉

단위: 점

구분	평균(5점 척도)
계절별 표시 차별화 필요성	4.05
계절별 기한 표시 어려움	3.67

주: 필요성은 전혀 필요 없음=1, 매우 필요 있음=5,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음=1, 매우 어려움=5

제 6 장

공급 측면에서의 쌀 기한표시제도 인식과 도입 평가

1. 도정업체 인식과 평가

1.1. 조사 개요

- 전국 17개 시/도 농협 RPC 44개(73.3%), 민간 RPC 9개(15.0%), 임도정공장 7개(11.7%) 등 60개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이메일 조사를 약 4주간 실시함(2018. 2. 12~2018. 3. 12.)

1.2. 조사 결과

1.2.1. 쌀 공급(납품) 실태

- 도정업체는 주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형슈퍼마켓에 쌀을 납품하며, 납품 전 까지 포장 쌀은 주로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실온 보관하며, 납품을 위해

주로 덮개가 없는 운반 차량(비밀폐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쌀 주요 공급(납품) 장소(중복응답)〉

단위: %

구분	비중
대형유통업체	19.3
중소형슈퍼마켓	19.3
양곡소매상	16.7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상	14.9
식자재업체	13.2
가공식품업체	10.5
단체급식업체	2.6
외식업체	3.5
합계	100.0

〈납품 이전까지 쌀 보관 방법〉

단위: %

구분	비중
외부와 차단된 실온 보관	73.3
외부와 차단되지 않은 장소에 실온 보관	13.3
냉장(저온) 보관	10.0
기타	3.3
합계	100.0

주: 기타는 당일 출고를 원칙으로 하여 보관을 하지 않는 경우임.

〈납품처에 쌀 운반 방법〉

단위: %

구분	비중
픽업트럭 등 짐칸에 덮개가 없는 운반 차량 이용	56.7
승합차 등 제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운반 차량 이용	25.0
냉장(저온) 운반 차량	15.0
냉동 운반 차량	3.3
합계	100.0

- 도정업체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도정일자 관련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대개 공급(납품)일자에 맞춰서 도정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납품일 기준으로 1-2일 이내 납품하고 있었음.

〈구매업체로부터의 도정일자 관련 요구 경험(5점척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보통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평균
비중	13.3	8.3	36.7	6.7	35.0	3.42

〈납품일자에 맞춰서 도정하는 정도(5점척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임	그려한 편임	매우 그려함	평균
비중	1.7	-	18.3	6.7	73.3	3.42

〈납품하는 쌀을 도정하는 시점(납품일 기준)〉

단위: %

구분	1-2일 이내	3-4일 이내	5-7일 이내	1-2주일 이내	1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합계
비중	68.3	20.0	5.0	3.3	1.7	1.7	100.0

- 상당수의 도정업체가 납품한 쌀을 반품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주요 반품 요인은 ‘도정일자가 많이 경과되어서’였음. 반품 제품이 발생할 경우 도정업체는 주로 반품 물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대금을 정산받고 있었음.
 - 도정업체는 반품된 제품에 대해서 주로 재가공하여 일반 쌀 이외의 용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품 제품 발생 시 대금 정산〉

단위: %

구분	비중
반품된 물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반품 물량만큼 이미 받은 납품대금을 돌려주거나 납품대금을 적게 받음	77.8
반품된 물량에 일정비율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을 제하고 납품대금을 돌려주거나 납품대금을 적게 받음	15.6
반품된 물량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납품대금을 모두 받거나 이미 받은 납품대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음	6.7
합계	100.0

〈반품 경험과 건수〉

단위: %, 건

반품 경험(%)		평균 반품 건수(6개월 기준)
있음	없음	
75.0	25.0	4.57건

〈주요 반품 요인(중복 응답)〉

단위: %

구분	비중
도정일자가 많이 경과되어서	42.2
포장지 불량/파손	17.8
변질	15.6
이물질 혼입	15.6
오래 묵은 쌀 느낌	13.3
벌레 발생	8.9
싸라기 쌀 포함	6.7
백미 이외의 다른 종류 쌀 섞임	4.4
중량 미달	2.2
도정일 이중 부착 등 표시 오류	-
기타	4.4
합계	100.0

〈반품 제품 처리 방법〉

단위: %

구분	비중
재가공하여 일반 쌀 이외의 용도로 판매	71.1
재가공하여 새 쌀로 판매	26.7
반품 받은 그대로 재판매	2.2
합계	100.0

1.2.2. 쌀 기한표시 인식과 평가

- 도정업체들은 기존의 날짜표시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기존 표시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한표시 도입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쌀 날짜표시(생산년도, 도정일자) 평가(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평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98
소비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3.97
필요한 표시이다	4.17

주: 전혀 그렇지 않음=1, 매우 그러함=5

〈추가 기한표시 도입 필요성(5점척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없는 편임	보통임	필요있는 편임	매우 필요함	평균
비중	36.7	6.7	43.4	5.0	8.3	2.42

주: 전혀 필요 없음=1, 매우 필요함=5

〈추가 기한표시 도입이 불필요한 주요 이유〉

단위: %

구분	비중
도정일자, 생산년도 등 기존의 표시가 충분한 역할을 함	42.3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의 추가적인 기한표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26.9
짧은 날짜 경과에 따른 품질의 변화가 크게 없음	15.4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반품이 증가할 수 있음	15.4
합계	100.0

- 도정업체들은 기한표시의 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필요도를 낮게 평가하였음. 상대적으로 품질유지기한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서 유통기한, 소비기한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낮은 편이었음.

〈현재 제공되는 정보(생산년도, 도정일자) 외에 추가정보 제공시 각 정보별 필요정도(5점 척도)〉

단위: %, 점

항목	전혀 필요없음	보통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유통기한	28.3	8.3	46.7	5.0	11.7	2.63
소비기한	26.7	3.3	55.0	6.7	8.3	2.67
품질유지기한	18.3	1.7	60.0	6.7	13.3	2.95

주: 전혀 필요 없음=1, 매우 필요함=5

-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평균 5.4개월, 소비기한 4.6개월, 유통기한은 2.7개월 정도인 것으로 평가함. 계절별로 기한을 달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높지 않았으며, 계절별로 기한표시를 달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각 기한별 쌀 도정일로부터 적절한 경과 시점〉

단위: %, 개월

구분	1주	2주	3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품질유지기한	1.7	1.7	1.7	20.0	10.0	15.0	3.3	5.0	18.3
소비기한	1.7	1.7	3.3	21.7	13.3	16.7	3.3	3.3	18.3
유통기한	1.7	5.0	6.7	35.0	18.3	16.7	3.3	-	8.3
구분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이상	평균 개월수	
품질유지기한	-	1.7	3.3	-	-	13.3	5.0	5.41	
소비기한	1.7	-	-	-	-	11.7	3.3	4.55	
유통기한	-	-	-	-	-	3.3	1.7	2.73	

〈쌀의 기한 정보 제공시 계절별 표시 차별화 필요성과 기한표시 어려움 정도〉

단위: 점

구분	평균(5점 척도)
계절별 표시 차별화 필요성	3.50
계절별 기한표시 어려움	4.00

- 도정업체들은 추가 기한표시 도입이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전반적인 경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또한 설비 도입의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었음.

〈추가적인 기한표시 도입의 경영상 영향(5점 척도)〉

단위: %, 점

항목	매우 감소	감소	보통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5점 척도)
전반적 경영비용	1.7	6.7	30.0	20.0	41.7	3.93
쌀 판매(납품)	8.3	10.0	45.0	13.3	23.3	3.33
납품업체로부터 반품	1.7	3.3	33.3	8.3	53.3	4.08
쌀 재고	1.7	1.7	56.7	10.0	30.0	3.65
포장재 관련 비용	-	3.3	36.7	10.0	50.0	4.07

주: 매우 감소=1, 매우 증가=5

〈기한표시 도입에 따른 설비 도입의 필요성 발생 가능성(비중)〉

단위: %

구분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발생하지 않을 것임	보통임	발생할 것임	매우 발생할 것임	평균 (5점 척도)
비중	3.3	1.7	38.3	10.0	46.7	3.95

2. 유통업체 인식과 평가

2.1. 조사 개요

- 수도권 지역 소비지 유통업체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약 4주간 실시함(2018. 2. 12. ~ 2017. 3. 12.)
 -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15개(30.0%),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10개(20.0%), 대형마트(할인점) 5개(10.0%), 쌀 전문판매점 5개(10.0%), 백화점 내 식품코너 5개(10.0%), 친환경 식품전문점 5개(10.0%), 식자재마트/식자재유통업체 5개(10.0%) 등 총 60개 업체를 조사함.

2.2. 조사 결과

2.2.1. 쌀 공급(납품) 실태

-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쌀 전문판매점, 식자재마트는 주로 양곡판매상,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백화점 내 식품코너, 친환경 식품전문점은 주로 본사에서 일괄 구매·배부, 대형마트는 본사 일괄 구매·배부 또는 도정업체

에서 쌀을 구매하였음. 소비자 유통업체들은 전체적으로는 1주일에 1회 정도 쌀을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업체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음.

〈쌀 구매 빈도〉

단위: %

구분	매일	1주일 2-3회	1주일 1회	2주일 1회	3주일 1회	4주일 1회	떨어질 때 마다	
전체	10.0	20.0	42.0	14.0	6.0	6.0	2.0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	6.7	53.3	20.0	13.3	6.7	-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30.0	30.0	30.0	10.0	-	-	-
	대형마트 (할인점)	-	40.0	40.0	20.0	-	-	-
	쌀 전문판매점	-	20.0	20.0	20.0	20.0	20.0	-
	백화점 내 식품코너	-	-	80.0	20.0	-	-	-
	친환경 식품전문점	20.0	-	40.0	-	-	20.0	20.0
	식자재마트 (식자재유통업체)	20.0	60.0	20.0	-	-	-	-

〈쌀 주요 구매처〉

단위: %

구분	양곡판매상 (도매상)	본사에서 일괄 구매·배부	도정업체	
전체	40.0	36.0	24.0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86.7	-	13.3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	70.0	30.0
	대형마트(할인점)	20.0	40.0	40.0
	쌀 전문판매점	60.0	-	40.0
	백화점 내 식품코너	-	100.0	-
	친환경 식품전문점	-	80.0	20.0
	식자재마트 (식자재유통업체)	60.0	-	40.0

- 유통업체들은 주로 덮개가 없는 운반 차량(비밀폐차량)을 이용하여 구매한 쌀을 매장(업체)까지 운반하였음. 그러나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마트는 제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운반 차량(밀폐차량), 친환경 식품 전문점은 냉장(저온) 차량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주로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 쌀을 실온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급업체에서 유통업체까지 쌀 운반 방법〉

단위: %

구분	집안에 덮개가 없는 운반 차량 이용	제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운반 차량 이용	냉장(저온) 운반 차량	
전체	50.0	38.0	12.0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53.3	46.7	-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40.0	60.0	-
	대형마트 (할인점)	40.0	60.0	-
	쌀 전문판매점	100.0	0.0	-
	백화점 내 식품코너	40.0	40.0	20.0
	친환경 식품전문점	20.0	0.0	80.0
	식자재마트 (식자재유통업체)	60.0	20.0	20.0

〈매장에서 쌀 보관 방법〉

단위: %

구분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 실온보관	외부와 차단되지 않은 장소에 실온보관	냉장(저온)보관	
전체	70.0	28.0	2.0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66.7	33.3	-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90.0	10.0	-
	대형마트 (할인점)	60.0	40.0	-
	쌀 전문판매점	80.0	20.0	-
	백화점 내 식품코너	60.0	40.0	-
	친환경 식품전문점	60.0	20.0	20.0
	식자재마트 (식자재유통업체)	60.0	40.0	-

-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쌀은 대체로 도정일자로 부터 2-4일 정도 경과하여 매장에 도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업체들은 대체로 도정일자를 기준으로 매장 판매(진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매한 쌀이 매장에 도착하는 시점(도정일자 기준)〉

단위: %

구분	당일 도정, 당일 공급	2-4일 정도 경과	5-7일 정도 경과	1주일-2주일 정도 경과	기타	
전체	14.0	62.0	8.0	14.0	2.0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6.7	53.3	6.7	26.7	6.7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20.0	50.0	20.0	10.0	-
	대형마트(할인점)	-	100.0	-	-	-
	쌀 전문판매점	20.0	60.0	20.0	-	-
	백화점 내 식품코너	-	80.0	-	20.0	-
	친환경 식품전문점	40.0	40.0	-	20.0	-
	식자재마트(식자재유통업체)	20.0	80.0	-	-	-

〈도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매장 판매(진열) 여부 결정(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평균(5점 척도)	
전체	4.30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4.13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4.70
	대형마트(할인점)	4.20
	쌀 전문판매점	4.80
	백화점 내 식품코너	4.60
	친환경 식품전문점	3.60
	식자재마트(식자재유통업체)	4.00

-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진열된 쌀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업체는 많지 않았음. 유통업체들은 대체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진열된 쌀을 회수하여 판매하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회수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주로 ‘2달(8주)-3달 정도 경과 제품’을 회수한다는 비중이 높았으며, 회수한 제품은 대체로 공급업체에 반품하였으며, 반품시 유통업체는 주로 반품 물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대금을 정산하고 있었음.

〈일정기간 지난 후 판매촉진 행사 실시 여부(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평균(5점 척도)
전체		2.78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53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3.50
	대형마트(할인점)	3.60
	쌀 전문판매점	2.40
	백화점 내 식품코너	2.40
	친환경 식품전문점	2.20
	식자재마트(식자재유통업체)	2.60

〈일정기간 지난 후 매장 진열 쌀의 판매/회수 여부〉

단위: %

구분		항상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진열하여 판매	거의(대체로)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진열하여 판매	거의(대체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회수하여 판매하지 않음	항상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회수하여 판매하지 않음
전체		10.0	30.0	40.0	20.0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6.7	53.3	20.0	20.0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10.0	20.0	30.0	40.0
	대형마트(할인점)	20.0	-	60.0	20.0
	쌀 전문판매점	20.0	80.0	-	-
	백화점 내 식품코너	-	-	100.0	-
	친환경 식품전문점	20.0	-	60.0	20.0
	식자재마트 (식자재유통업체)	-	20.0	60.0	20.0

〈일정기간 지난 후 매장 진열 쌀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시점(도정일자 기준)〉

단위: %

구분		1달(4주) 정도 경과 제품	1달(4주)-1달 반(6주) 정도 경과 제품	1달 반(6주)-2달(8주)정도 경과 제품	2달(8주)-3달 정도 경과 제품	4달 정도 경과 제품
전체		6.7	33.3	6.7	50.0	3.3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0.0	33.3	16.7	33.3	16.7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0.0	28.6	14.3	57.1	0.0
	대형마트(할인점)	25.0	25.0	0.0	50.0	0.0
	백화점 내 식품코너	20.0	40.0	0.0	40.0	0.0
	친환경 식품전문점	0.0	75.0	0.0	25.0	0.0
	식자재마트(식자재유통업체)	0.0	0.0	0.0	100.0	0.0

주: 일정기간이 지난 후 대체로 또는 항상 회수한다고 응답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함.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장에서 회수한 쌀의 처리 방법〉

단위: 점

구분		폐기	공급업체에 반품
전체		13.3	86.7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33.3	66.7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14.3	85.7
	대형마트(할인점)	-	100.0
	백화점 내 식품코너	-	100.0
	친환경 식품전문점	25.0	75.0
	식자재마트(식자재유통업체)	-	100.0

주: 일정기간이 지난 후 대체로 또는 항상 회수한다고 응답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함.

〈 반품 제품 발생 시 대금 정산(유통업체 유형별)〉

단위: %

구분		반품 물량만큼 정확히 정산	감가상각 고려하여 정산	원래 계약대로 반품 고려하지 않고 정산
전체		76.9	15.4	7.7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75.0	-	25.0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50.0	50.0	-
	대형마트(할인점)	100.0	-	-
	백화점 내 식품코너	80.0	-	20.0
	친환경 식품전문점	100.0	-	-
식자재마트 (식자재유통업체)		75.0	25.0	-

주 1) 회수한 쌀을 공급업체에 반품하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함.

2) 반품된 물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반품 물량만큼 이미 받은 납품대금을 돌려주거나 납품대금을 적게 받음=반품 물량만큼 정확히 정산, 반품된 물량에 일정비율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을 제하고 납품대금을 돌려주거나 납품대금을 적게 받음=감가상각 고려하여 정산, 반품된 물량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납품대금을 모두 받거나 이미 받은 납품대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음=원래 계약대로 반품 고려하지 않고 정산 등으로 축약함.

- 소비지 유통업체의 경우 판매한 쌀을 반품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 수준 정도였으며, 6개월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1.40건의 반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품이 된 주요 요인은 ‘벌레 발생’이 가장 높았음.

〈소비자 반품 경험과 건수〉

단위: %, 건

반품 경험(%)		평균 반품 건수(6개월 기준)
있음	없음	
52.0	48.0	1.40건

〈주요 소비자 반품 요인(중복 응답)〉

단위: %

구분	비중
벌레 발생	46.2
도정일자가 많이 경과되어서	30.8
오래 묵은 쌀 느낌	30.8
밥맛이 좋지 않아서	26.9
싸라기 쌀 포함	11.5
단순 번심	3.8
합계	100.0

2.2.2. 쌀 기한표시 인식과 평가

- 소비자 유통업체들은 기존에 포장 쌀의 날짜표시인 생산년도, 도정일자 유용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유통업체들은 날짜표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음. 특히 쌀 날짜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함.
-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생산년도, 도정일자 이외에 추가적인 기한표시 도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상대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는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전문 판매점, 친환경 식품전문점은 필요성을 낮게 평가함. 유통업체들은 추가적인 기한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기존의 표시가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함.

〈쌀 날짜표시(생산년도, 도정일자) 평가(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평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4.20
소비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4.22
필요한 표시이다	4.38

주: 전혀 그렇지 않음=1, 매우 그러함=5

〈추가 기한표시 도입 필요성(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평균(5점 척도)	
전체	3.38	
업체 유형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3.27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3.40
	대형마트(할인점)	3.80
	쌀 전문판매점	2.80
	백화점 내 식품코너	4.00
	친환경 식품전문점	2.80
	식자재마트(식자재유통업체)	3.80

주: 전혀 필요 없음=1, 매우 필요함=5

〈추가 기한표시 도입이 불필요한 주요 이유〉

단위: %

구분	비중
도정일자, 생산년도 등 기존의 표시가 충분한 역할을 함	53.8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반품이 증가할 수 있음	15.4
쌀은 날짜 경과에 따른 품질의 변화가 크게 없음	15.4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의 추가적인 기한표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15.4
합계	100.0

주: 추가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13개 유통업체의 응답 결과임.

- 유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품질유지기한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비기한, 유통기한 순으로 필요성을 높이 평가함.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평균 7.5개월, 소비기한 4.9개월, 유통기한은 3.6개월 정도인 것으로

로 평가함. 계절별로 기한을 달리 표시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대체로 표시 차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현재 제공되는 정보(생산년도, 도정일자) 외에 추가정보 제공시 각 정보별 필요정도 (5점 척도)〉

단위: %, 점

항목	전혀 필요없음	보통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유통기한	4.0	20.0	26.0	28.0	22.0	3.44
소비기한	2.0	8.0	34.0	36.0	20.0	3.64
품질유지기한	2.0	10.0	28.0	34.0	26.0	3.72

주: 전혀 필요 없음=1, 매우 필요함=5

〈각 기한별 쌀 도정일로부터 적절한 경과 시점〉

단위: %, 개월

구분	1주	2주	3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품질유지기한	-	-	-	2.0	4.0	24.0	-	12.0	22.0
소비기한	-	-	-	2.0	18.0	28.0	2.0	14.0	24.0
유통기한	-	-	2.0	22.0	18.0	28.0	4.0	4.0	14.0

구분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이상	평균 개월수
품질유지기한	-	-	-	4.0	-	28.0	4.0	7.46
소비기한	-	-	-	-	-	12.0	-	4.88
유통기한	-	-	-	-	-	8.0	-	3.60

〈쌀의 기한 정보 제공시 계절별 표시 차별화 필요성과 표시 차별화 어려움〉

단위: 점

구분	평균(5점 척도)
계절별 표시 차별화 필요성	3.88
계절별 기한표시 어려움	3.70

- 유통업체들은 추가적인 기한표시 도입에 의해 전반적인 경영비용과 소비자로부터의 반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쌀 판매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매장 재고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음.

- 또한 기한표시 도입이 경제사회적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소비자 알 권리 확대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식품폐기가 오히려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추가적인 기한표시 도입의 경영상 영향(5점 척도)〉

단위: %, 점

항목	매우 감소	감소	보통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5점 척도)
전반적 경영비용	-	8.0	62.0	22.0	8.0	3.30
쌀 판매	-	18.0	70.0	12.0	-	2.94
소비자로부터 반품	-	12.0	30.0	54.0	-	3.50
매장 재고	2.0	16.0	46.0	34.0	2.0	3.18

주: 매우 감소=1, 매우 증가=5

〈추가적인 기한표시 도입의 효과(5점 척도)〉

단위: %, 점

항목	전혀 없음	없음	보통임	있음	매우 있음	평균 (5점 척도)
쌀 품질 개선(고품질화)	-	-	38.0	40.0	22.0	3.84
쌀 수급 조절(재고감소)	-	16.0	36.0	36.0	12.0	3.44
소비자 알 권리 확대	-	-	22.0	56.0	22.0	4.00
안전성 강화	-	2.0	44.0	30.0	24.0	3.76
식품폐기 영향 (음식물 쓰레기 증가)	-	8.0	26.0	56.0	10.0	3.68

주: 매우 감소=1, 매우 증가=5

제 7 장

쌀 기한표시제 도입 여건 진단과 과제

1. 도입 여건 진단

- 현재 양곡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양곡표시제도’가 “양곡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의무표시사항으로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등급 등이 있고, 단백질 함량의 경우 임의표시사항으로 쌀에만 해당됨.
- 양곡표시사항 중 낱짜(기한) 관련 표시사항에는 생산연도, 도정연월일(도정 일자) 등이 있으며 쌀과 현미의 경우 생산연도와 함께 도정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쌀과 현미를 제외한 다른 양곡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함.
- 쌀 판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단계의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정 이후의 판매일자가 다양했으나 평균적으로 2개월 이

내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음. 반면, 수입쌀은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1년이 훨씬 경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산과는 대조됨.

-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의 표시 실태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표시 위치가 일관되지 않아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음. 또한 온라인 판매인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포함되는 정보들이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쌀은 도정 이후 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 저하 정도가 크지 않은 물적 특성이 있음. 그러나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쌀 구입 시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쌀의 물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최근 도정한 쌀에 대한 과도한 선호로 연결될 수 있음.
- 그러나 쌀 표시사항에 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기하는 것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미검사 삭제 시 쌀 등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1인 가구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소포장 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 쌀 등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및 소포장 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향후 다른 양곡 표시사항에 비해 도정연월일 등의 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의 기한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도정한 쌀의 품질 저하 속도는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계절 등과 같은

판매 시기, 소비자가 구매한 후 가정에서의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이를 일괄적으로 섭취 가능한 기한으로 인식하여 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쌀 소비권장기한 도입 여건 진단〉

긍정적 요인 및 영향	부정적 요인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 등의 기도입 시 유통업체 등은 제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 쌀 품질이 제고되는 부수적인 효과 기대 ■ 도정한 쌀의 소비권장기한(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좋은 품질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 품질유지기한 등이 도입되고 정착되면 품질유지가 용이한 소포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제고 효과 기대 ■ 소비권장기한 도입으로 소비자가 보다 신선한 상태의 쌀을 보다 많이 소비하게 될 경우, 쌀 소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쌀 소비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 쌀의 품질저하 속도는 유통단계 관리 상태, 소비자가 구매한 후 가정에서 관리 상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일률적으로 표시기한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 존재 ■ 산지유통업체가 제품에 기한표시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리 작업 수반 ■ 도정한 쌀의 품질저하 속도는 유통과정에서의 관리, 계절 등과 같은 시기 등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을 거친 객관적인 품질유지기한을 설정하는데 어려움 존재 ■ 품질유지기한 등의 소비권장기한을 도입하면 양곡도매상 및 소비자유통업체로부터 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 반품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우려됨. ■ 쌀은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저하 정도가 크지 않은 물리적 특성이 있는데, 도정년월일이 제품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도정한 쌀에 대한 과도한 선호가 발생할 우려 존재 ■ 소비자가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으로, 이를 판매기한으로 오인하여 제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쌀 이외의 곡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와 도정년월일 표시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쌀에 대해서만 과도한 표시의무를 부과한다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수입쌀이 도정된 후 국내에 도입되어 유통되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수입산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 필요

2. 기한표시제 도입 방안과 과제 검토

2.1. 기본방향

2.1.1. 정부 쌀 정책 기조 반영

- 쌀 기한표시제 도입은 정부의 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쌀 고품질화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고품질 쌀 중심의 유통·수요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제도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 여부와 방안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2.1.2. 소비자 필요와 요구 대응

- 농식품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과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함. 따라서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2.1.3. 공급 부문 실태와 형평 고려

- 쌀 기한표시제 도입은 소비자의 쌀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쌀 산업 전반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생산자, 도정업체, 유통업체 및 기타 관련 업체·기관의 제도 적용 여건과 파급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부문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표시제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쌀 시장 개방으로 밥쌀용 쌀이 매년 일정량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국제 규범과 합치하면서 국내산과 수입산 쌀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이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2. 도입 방안과 과제

2.2.1. 단계적 도입 논의 및 방안 마련 필요

- 농식품 기한표시는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제도 도입을 단기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경제적 파급 영향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활용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범사업 이후에 정책 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2년 가공식품에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기 위해 안전성 우려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품목을 선정하여 가공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또한 시범사업 실시 이후에 병행표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를 실시함. 연구 결과 병행표시 도입이 자원 낭비와 소비자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의 전면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8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업체의 신청을 통해 18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쌀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도정업체들은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유형별 기한표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었음. 그러나 일부 도정업체의 경우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시범사업 시행여부와는 별도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기한표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2.2. 세부 도입 방안 검토

가. 표시 유형

- 쌀에 적용되는 도정일자, 연산표시 이외에 일반적으로 기한표시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존의 도정일자, 연산표시 이외에 이들 기한표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 도입 여건, 상품 특성,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한표시의 개념과 쌀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기한표시 유형 중에서 품질유지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중국(품질보증기한), EU(best-before date, 상미기한), 호주(best-before date, 상미기한) 등의 경우에도 쌀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임. 쌀의 물성을 고려할 경우 기한표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정성이 높음.
- 실제로 도정업체, 소비자 유통업체 등 쌀 공급부문에서도 기한표시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 품질유지기한을 가장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기한이 경과하는 것과 판매 가능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일반적인 기한표시에 대한 인식과 합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소비자의 요구 반영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에는 품질유지기한보다는 소비

기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그러나 소비기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표시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패성 높은 식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쌀에 도입하는 것은 적정하지는 않음.

나. 적정 기한

■ 계절별 기한 차별화 한계

- 설문조사 결과 수요 및 공급 부문에서 기한표시 도입 시 계절별 기한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재 일반적인 식품 표시에 있어서 계절별로 표시된 기한을 달리하고 있지 않음. 또한 기한표시를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도정업체가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으며, 비용 발생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단기간에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적정 기한 검토 및 고려 요인: 동일 기한 도입 시

- 소비자 조사결과 유통기한의 경우 3개월-5개월, 소비기한은 5개월-7개월, 품질유지기한은 5-9개월 정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의 일부 과학적인 실험 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을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함. 이들 연구의 실험결과 온도, 계절별로 1개월-7개월 정도까지의 기한을 제시하고 있음.
 - 이밖에 호주는 쌀에 3개월 이상인 식품에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에 대한 기한표시인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표시기한을 2개월 이하로 할 경우 수요 및 공급부문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관련인(업체) 인식(의향)에 비해 다소 기한이 짧은 편이며, 소비

자의 쌀 구매 행태와 합치되지 않아서 시장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쌀 관련인(업체)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할 경우 유통기한은 4개월 내외, 소비기한 5~6개월, 품질유지기한 6-8개월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소비자의 85.5%가 4개월 또는 4개월 미만에 1번 정도 쌀을 구입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기한 도입에 큰 의미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적정기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의 관련 실태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현재 쌀에 기한표시를 하는 중국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재질에 따라 12, 18개월 정도의 기한표시가 일반적이고, 대만은 6개월 정도의 기한 표시가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표시기한이 3개월 이내로 설정된다면 중국 등의 쌀 수출국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보다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과정에서 통관 기한이 긴 경우 1년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MMA)의 수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적정 기한 평가 결과〉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상미기한)
실험 연구	이기춘 외 (2007)			10-4월: 48±2 5-6월: 23±3 7-9월: 16±2
	박동규 외 (2006)			겨울: 8주(12주) 봄: 6주(12주) 여름: 4주(8주)
	横江未央· 川村周三 (2008)			5℃: 7개월 15℃: 5개월 20℃: 3개월 25℃: 2개월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상미기한)
설문 조사	소비자	4.7개월	6.0개월	6.8개월
	외식업체	4.8개월	6.7개월	8.6개월
	도정업체	2.7개월	4.6개월	5.4개월
	유통업체	3.6개월	4.9개월	7.5개월
해외 사례	대만		6개월-12개월 정도 (보존기한)	
	중국			12-18개월 정도 (품질보증기한)

- 주 1) 이기춘 외(2007) 등 농촌진흥청 연구와 박동규 외(2006)은 일반적인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는 품질유지기한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박동규 외(2006)의 괄호안의 경우 상품성 한계에 도달하는 기한을 의미함.
 3) 대만의 보존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식용안전안심까지의 기한을 의미하여 소비기한과 의미가 유사함.

2.2.3. 쌀 관련 홍보·교육 확대

- 쌀 기한표시 도입에 앞서서 쌀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이해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쌀의 품질 및 표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식·이해 제고가 필요함.
- 기존의 쌀 관련한 소비자 홍보·교육은 주로 전통 식문화에 대한 소비자 이해 확대와 소비자 수요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예컨대 쌀 관련한 국가 단위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식생활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어짐. 2016년 대표적인 국가 식생활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쌀 소비 증진을 위한 가래떡 데이 관련 행사,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이 있음. 또한 쌀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등의 실습교육을 실시함.
- 기존에 추진되는 국가 식생활교육 사업 등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쌀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쌀 고품질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소비자의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

비자의 쌀 관련 홍보·교육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고품질 쌀 소비 확산과 연계하여 쌀 표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자의 기한표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쌀 표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또한 소비자 대상 식생활 교육·홍보를 통해서 기한표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쌀 포장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의 경우 도정일자, 생산년도 이외에 양곡표시 활용도가 높지 않음. 쌀 표시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표시를 활용하여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관방법, 상미기한 등 고품질 쌀을 소비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정 내 소비 과정에서 고품질 쌀 소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2.4. 소비자 구매 행태를 고려한 기존 제도 실효성 확보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해 농식품 구매에 있어서 온라인 구매를 포함한 통신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소비자의 온라인(통신판매) 이용 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농식품에 대한 불만족한 경험도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높여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곡표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라인을 통한 쌀 구매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곡표시제도 운영의 취지가 온라인 거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 새로운 표시(기한표시) 도입에 앞서 기존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온라인을 통한 쌀 구매시 소비자가 양곡표시 사항을 포함한 품질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표준 모델(양식) 또는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오프라인 판매 시 양곡표시제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품목, 중량,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등)을 온라인 판매 시에도 제품설명 시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필수적으로 주어질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시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밖에 오프라인을 통한 쌀 구매 시 소비자들이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 별도표기가 가능한 표시사항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를 일정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괄표시면에 별도표기라고 기재한 후 주표시면에 표시하거나, 기타 제품의 측면, 상단 또는 하단 등 주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등 제품 마다 표시 위치가 일정하지 않음.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표시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

2.2.5. 기한표시 도입·적용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식품 표시의 기본적인 기능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농식품 표시의 도입·적용은 소비자의 활용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비자에 의한 표시의 적정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쌀의 유형별 기한표시의 적정 기한 설정에 온도·습도 관련한 요소들이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학적 연구에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음. 유통·소비 단계에서 운반, 저장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급단계에서는 기간 경과에 따른 쌀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단계에서 향후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쌀을 수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켜 소포장 쌀의 구매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공급 부문의 경우 쌀 포장 단위 다양화, 제품 포장 및 관리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함.

2.2.6. 도정업체의 기한표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도정업체의 경우 기한표시를 도입할 경우 가공단계에 인쇄 설비 도입 등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와 유통업체로부터의 반품 증가에 따른 이윤 손실 등을 예상하고 있음. 특히 설문조사 결과 유통업체로부터의 반품이 현재에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비용 손실을 도정업체에서 떠맡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정업체가 반품에 따른 비용 손실을 완전하게 떠안지 않도록 계약상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한표시가 도입될 경우 기한이 지난 쌀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도정업체에게 과도한 불이익(제약)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함. 기한 표시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에 대해서 가능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또는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현재 반품 처리된 제품을 재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도정일을 다시 표시하여 재판매하고 있음. 이는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며 기한표시가 도입되는 경우 재도정 후 재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기한이 초과하여 반품된 쌀의 처리가 법적(규정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한이 초과되어 반품된 쌀의 경우 가공용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상당 수준의 식품 폐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중시하는 현재의 식품표시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반하는 결과임. 그러나 소비자 관점에서 기한이 초과된 쌀의 가공용 등으로의 재활용은 거부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방안 도출시 고려되어야 함.

2.2.7. 쌀 관련 과학적 연구 추진

- 쌀 기한표시 설정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다년간 장기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 소비단계 쌀 보관·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 변수들을 고려한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 기한에 따른 쌀 품질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적정 상미기한을 제시하는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의 쌀 취급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통제된 조건으로 1년 동안 추진됨.
 - 또한 품질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연구가 최상의 품질(식미)이 유지되는 기간을 전제로 실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요 또는 공급 부문에서 인식하는 적정 기한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수요 부문의 소비행태와 공급 부문의 쌀 취급 관련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